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0월 16일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선산출장소장 박 은 희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

○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가) 기 금 명 :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나) 주관기관 : 경상북도
 - 다)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라) 출연금액 : 금228,000천원
 - 마) 조성목표 : (' 93~' 17년)2,000억원→(' 27년까지)3,000억원
 - 바)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
-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 (' 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2) 사업개요

- 가)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 법인, 농어업 관련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나)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물산업 육성지원 사업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농수산물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물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물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라) 사업추진절차

- '25. 9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25. 9~10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25.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26.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사업자⇒시)
- '26.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26. 1~12월 : 용자실행(금융기관)

3) 출연의 필요성

가)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

나)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

4)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가)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출연실적			출연계획		비고
'93~'24년 출연액	'25년 출연액	누계액 ('93~'25년)	'26년 출연액	예상누계액 ('93~'26년)	
6,936	228	7,164	228	7,392	

나)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93~'24년	'25년 (8월말 기준)	'26년	조성총액 ('93~'26년)	조성목표액
재원 별	계	276,655	8,669	7,852	3,000억원 이상 ('27년도까지)
	도	65,924	-	2,500	
	시·군	116,404	4,352	4,352	
	금융기관	24,814	965	1,000	
	이자수익	69,513	3,352	-	

다) 연도별 지원실적(구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 '16년	'17	'18	'19	'20	'21	'22	'23	'24	'25
농가수(호)	357	213	17	13	11	8	7	20	14	28	26
융자금액	28,294	20,404	2014	2,124	1,720	790	643	2,670	2,756	2,500	2,673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출연안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도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어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음.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법인 및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사업의 수혜대상이 폭넓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인해 구미시 관내 농가 및 법인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